

문경시 읍·면·동체육회 규정

제정 2021. 02. 26.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문경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 라 한다) 정관 제5조 3항 및 제32조에 따라 시체육회의 지회인 읍·면·동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해당 읍·면·동명을 포함하여 ‘○○○체육회’로 명칭을 정해야 하며, 영문명칭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읍·면·동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 읍·면·동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읍·면·동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읍·면·동체육회의 사무소는 해당 읍·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읍·면·동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읍·면·동 자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그 밖의 지역과의 스포츠 교류사업
2. 읍·면·동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종목단체의 활성화 지원
3. 시민체육대회 출전 선수선발 및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5.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6.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7. 읍·면·동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읍·면·동장과 협의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읍·면·동체육회는 읍·면·동종목단체를 회원단체로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읍·면·동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읍·면·동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 가입을 승인 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읍·면·동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읍·면·동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 읍·면·동종목단체의 읍·면·동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정관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시체육회의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읍·면·동체육회는 읍·면·동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읍·면·동체육회의 규정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읍·면·동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읍·면·동종목단체장의 궤위 또는 사고
4. 국내 체육단체 및 시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읍·면·동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읍·면·동체육회 총회개최 시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 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체육회가 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5조에 따라 읍·면·동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때에는 읍·면·동 체육회는 30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시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읍·면·동종목단체는 시체육회 해당 종목단체에 가입을 한 후 읍·면·동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읍·면·동체육회는 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대의원총회

제10조(대의원) ① 읍·면·동체육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일 때 창립총회에서 대의원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② 정회원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 (전자 문서 포함)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 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 ⑥ 읍면동체육회에 가입된 회원단체가 없거나 기준인원 보다 미달인 경우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대의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의원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읍·면·동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읍·면·동체육회의 해산 및 당해 단체와 회원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 2.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정·준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읍·면·동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읍·면·동체육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읍·면·동체육회 임원(사무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읍·면·동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장의 임면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읍·면·동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읍·면·동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4. 감사 2인

②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명예회장, 자문위원,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읍·면·동체육회 총회 의결로 증원할 수 있으나, 사전에 지회의 특성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③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해당 읍·면·동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장은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선출 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 및 『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하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읍·면·동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하되, 읍·면·동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은 시체육회의 회장선거와 시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읍·면·동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읍·면·동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 체육회 회장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인과 비경기인을 재적임원수의 20% 포함
2. 여성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
3. 읍·면·동종목단체 임원을 재적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읍·면·동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 체육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읍·면·동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읍·면·동 체육회의 임원이 해당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읍·면·동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읍·면·동체육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읍·면·동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장을 포함한다)으

로 하며 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모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사무장을 제외한다)은 문경시체육회 정관 제26조에 의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중임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무장의 중임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감사,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⑦ 중임횟수 제한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상급 또는 동급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상급 및 동급 종목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상급 및 동급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임원의 보수) 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읍·면·동 종목단체

제33조(읍·면·동 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읍·면·동종목단체는 종목의 클럽 및 회의 동호인으로 조직한다.

② 읍·면·동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문경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읍·면·동 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읍·면·동종목단체의 임원은 시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읍·면·동종목단체 임원의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제28조를 준용한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읍·면·동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3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체육회에 설치하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15인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한다. 위원에게는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읍·면·동 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 읍·면·동 종목단체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과 읍면동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읍면동체육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법무사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학계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활동이나 공직자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중앙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체육회가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동체육회에 설치하는 제35조 및 36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9조(재원) 읍·면·동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읍·면·동체육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연회비 및 회원의 회비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사업수익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7.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8. 기타수입금

제40조(잉여금의 처리) 읍·면·동체육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읍·면·동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읍·면·동체육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읍·면·동체육회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읍·면·동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체육회 및 시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및 읍·면·동 종목단체의 임직원
2. 읍·면·동체육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시체육회, 시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읍·면·동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읍·면·동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 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연도) 읍·면·동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회계감사 및 경영공시) ① 읍·면·동체육회의 회계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5조의 2(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체육회와 읍·면·동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문경시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읍·면·동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경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에 태만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시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

혀지고, 포항시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사 무 소

제46조(사무소) ① 읍·면·동체육회에 사무소를 두며, 사무소에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47조(사무소의 운영 등) 읍·면·동체육회는 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정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기록 및 보관(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포함)
2. 총회 및 이사회 회의서류 작성과 결과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48조(해산) ① 읍·면·동체육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읍·면·동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읍·면·동장의 허가를 얻어 읍·면·동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변경) ①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0조(규정 제·개정) ① 읍·면·동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당해 읍·면·동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읍·면·동체육회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 시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의 해석 등) ① 이 규정은 읍·면·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읍·면·동체육회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읍·면·동체육회의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읍·면·동체육회가 시체육회 정관,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제한사항) 읍·면·동 체육회가 시체육회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정관 제6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3조(경영공시) ① 읍·면·동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회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읍·면·동체육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승인받은 읍면동체육회규정은 해당 읍·면·동체육회에서 본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현 임 회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는 본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문경시체육회로부터 인준 받은 임원의 수와 임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부칙 제2조에 의거 임원의 임기는 차기 회장선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총회일 전일까지로 하고, 감사는 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읍면동체육회 임원의 임기는 2022년 2월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읍면동체육회에서는 2024년 2월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를 회장의 임기로 적용하여 읍면동체육회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읍면동체육회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잔여 임기가 2022년 2월까지 미치지 못하는 임원의 임기는 2022년 2월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